

〈일반논문〉

## 조보와 실록\*

김 경 수 \*\*

—〈목차〉—

- I. 머리말
- II. 조보의 발행
- III. 조보의 내용
- IV. 조보의 사료적 가치
- V. 맺음말

[국문초록]

조보에는 군주의 동정과 인사 내용 및 국정 시행사, 전국에서 올라온 상소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었다. 승정원에서 발행된 일종의 관보로, 오늘날의 신문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다.

조보는 국정 시행사가 지방 소읍까지 전달되어 통치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통을 위한 언론 기능을 수행했다. 비밀주의 원칙에 따라 볼 수 없었던 사초에 비해, 공개성이 담보된 조보는 당대 역사와 정국 운영을 파악

\* 이 글은 2020학년도 청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필자의 글(『조보의 발행과 그 성격』, 『사학연구』 58·59, 1999)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2019년 ‘민간인쇄조보 학술세미나’(영천역사문화박물관, 2019. 11. 28.)에서 발표하였으며, 이후 전면 개고하였다.

\*\* 청운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할 수 있는 근거자료였다. 무엇보다 『실록』 편찬 시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은 사초와 동일하게 인식되었음을 증명한다. 조보와 실록의 연관성과 사학사적 의미 부여가 가능한 이유이다.

□ 주제어

조보, 실록, 승정원, 사초, 관보

---

## I. 머리말

어느 시대(왕조)에서든 역사서 편찬 사업은 중요한 정책의 하나였다. 전대가 되었든 당대가 되었든(혹은 관찬이든 사찬이든) 지난 사실의 정리를 통해, 오늘의 문제 해결과 내일의 구체적인 대안의 강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는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다보니 사서의 편찬은 주도 세력의 주관적인 의도가 반영되는 경향이 크다. 집권 세력은 체제의 안정적인 유지 의도가, 집권을 도모하려는 세력은 체제의 비판 기초가 강하다. 역사적 평가보다 현재적 평가에 민감했기 때문인데, 그만큼 역사서는 당대든 후대든 큰 반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왕조 건국 이후 집권 세력들은 천명을 받은 군주와 함께 자신들이 추진하는 국정 운영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방편의 하나가 고려왕조의 전통을 계승하여 실록을 편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은 태종 대 『태조실록』이 처음 편찬된 이후, 왕조 내내 후계한 왕 즉위 초기에 적극 추진되었다.

실록의 편찬 당시 가장 중요하게 활용된 자료는 국정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사실을 빠짐없이 기록했던 사관의 사초였다. 사초와 더불어 본고의 주제인 조보 역시 중요한 편찬 자료의 하나였다. 철저한 비밀 보장 원칙에 따라 공개하거나 누설했을 경우 엄벌에 처해졌던 사초와 달리,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열람이 가능했던 조보는 공개성이 강했다.<sup>1)</sup>

공개성이 담보되었던 조보는 당대 국정 운영과 관련된 사실의 전달이라는 언론 매체(소식지)의 기능을 수행했다. 이와 더불어 군주의 통치가 전국으로 전달되어, 체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얼 때가 온다. 국정사를 조보에 수록 후 반포하여 안팎으로 잘 알게 하여 한계를 없애야 한다.”<sup>2)</sup>는 정조의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초에 비해 당대 국정 운영 사실의 확인이 조보를 통해 가능했던 만큼, 하루 분량의 실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3)</sup>

이제까지 조보에 대한 연구 성과는 괄목할만하게 진행되었다. 언론학 분야의 연구<sup>4)</sup>를 통해, 조보의 기원과 운영, 특징 등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다. 역사학 분야에서도 다양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공론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매체로서의 기능,<sup>5)</sup> 특정 기관에 소장된 조보의 특징<sup>6)</sup> 및

1) 오희문의 『쇄미록』에 진주성전투 전황이 조보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표현은, 지방관 혹은 장수의 장계가 보고되었고, 그 사실이 조보에 수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문자, 「정보·통신과 임진왜란」, 『한일관계사연구』 22, 2005).

2) 『정조실록』 권22, 10년 12월 19일(戊午).

3) 차용걸은 조보를 사초로 인식했다(『조선왕조실록』의 편찬 태도와 사관의 역사의식, 『한국사론』 6, 국사편찬위원회, 1981).

4) 최준, 『한국신문사』, 일조각, 1960; 임종순, 「조보와 경보에 대하여」, 『서지학』 2, 1969; 박정규, 「조보의 기원에 대한 연구」, 『신문연구소학보』 15, 1978; 차배근, 「우리나라 조보에 대한 신문학적 분석고」, 『신문연구소학보』, 1980; 최정태, 『한국의 관보』, 아세아문화사, 1992; 김민환, 『한국언론사』, 사회비평사, 1996; 김학천, 「조선시대의 신문(조보) 이야기」, 『한글한자문화』 78, 2006; 정진석, 「월북 언론인 이갑석의 조보 연구」, 『신동아』 2009-12월호, 2009.

5) 김경래, 「인조대 조보와 공론정치」, 『한국사론』 53, 2007.

기록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고찰,<sup>7)</sup> 유통과정의 의미와 함의에 대한 연구,<sup>8)</sup> 19세기 후반 당파에 따른 관직 임용 사실에 대해 『승정원일기』 초고와 『조보』 초고 등 비공식 기록물을 공식 기록물과 비교·분석한 연구<sup>9)</sup> 등이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국사편찬위원회와 규장각, 각 대학 도서관과 박물관, 그리고 개인 가문에 소장된 조보에 대한 소개<sup>10)</sup> 등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가 쌓였다. 또한 민간에서 발행한 인쇄본 조보의 발굴과 분석,<sup>11)</sup> 16세기 인쇄방식의 다변화 현상과 인쇄사적 의미를 살핀 연구<sup>12)</sup> 등이 진행되어 조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본고는 조보의 발행과 수록 내용 등을 바탕으로, 조보와 실록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록 편찬 시 광범하게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볼

6) 양진석, 「국민대 소장 조보의 특징」, 『학예연구』 창간호, 2000.

7) 서진원, 「조보에 대한 기록학적 고찰」, 서울대 석사논문, 2016.

8) 유영옥, 「『이재난고』를 통해 본 조보의 유통과 함의」, 『동양한문학연구』 33, 2011.

9) 김덕헌, 「19세기 후반 당파 정치와 당파 기록물의 이중성-승정원일고(초)와 조보(초)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05, 2019.

10) 필자가 직접 현존 조보를 조사·수집하여 연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일 것이나, 방만하게 산재한 고문서를 일일이 살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기왕에 간행된 여러 편의 단행본과 각 대학 박물관 및 도서관에서 발행한 고문서 자료집성(①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② 이기백, 『한국상대고문서자료집성』, 일지사, 1987; ③ 허홍식, 『한국의 고문서』, 민음사, 1988; ④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1-40, 1983; ⑤ 한국편찬위원회, 『고문서』, 1994; ⑥ 규장각, 『고문서』 11, 관부문서(8), 1995; ⑦ 안동대학교박물관, 『유곡역 관련고문서집』, 안동대학교박물관, 1997.) 등을 참고하였다.

11) 김영주, 「조선조 민간인쇄조보의 몇 가지 쟁점」, 『언론학연구』 3, 1999; 김영주, 「조보에 대한 몇 가지 쟁점: 필사조보의 기원, 명칭, 폐간시기, 기문기사 성격과 민간인쇄조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3, 2008; 김영주·이범수, 「조선시대 민간인쇄조보의 언론사적 의의」, 『한국언론정보학보』 85, 2017.

12) 옥영정, 「16세기 조선의 목활자 인쇄와 1577년 조보 인쇄의 가치」, 『한국출판학회연구』 46, 2020.

때, 조보가 지니는 의미와 가치는 당대사의 이해와 다르지 않다. 이제까지 당대사의 이해를 실록에 의존하고 있는 한계를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보의 사학사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조보의 발행

조선시대 정기적으로 소식을 전하는 기별(지)이 있었다. 기별(寄別, 혹은 寄別)<sup>13)</sup>이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입과 글로 전달되었던 것을 의미하는데, 조보의 우리말 별칭이었다.<sup>14)</sup> ‘기별(조보)’의 배포를 위해 승정원 옆에

13) 기별의 의미에 대해 정의한 것으로는 『한국어대사전』의 정의(소식 및 통지의 의미로 오늘날의 정보(Information))와 『고어사전』(남광우, 일조각, 1975)과 『이조어사전』(유창순, 연세대출판부, 1985)의 정의(‘기별’이 변형된 것으로 조선 왕조에서 상용어로 흔히 쓰인 말) 등이 참조된다. 요즘도 [심부름 보낸 사람의 ‘기별’이 왔는가라는 표현과 [이 정도 먹어서는 간에 ‘기별’도 안 간다]와 같은 일상 속 표현이 있다. 이렇게 볼 때, ‘기별’이란 의미가 전통시대와 현대사회에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 기별 이외에 조보의 의미로 사용된 여러 명칭을 살펴보자. 첫째, ‘京奇’인데 이는 ‘서울 기별’이란 뜻으로 서울에서 발행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둘째, 分撥이다. 당일 분 전체 기사에서 중요하고 긴급한 내용을 발취·기록하여 신속하게 통보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속보나 호외에 해당된다. 셋째, 轄奇이다. 지방 감영에서 발행하는 지방 소식지인데, 감영에서 처리되는 각종 정보와 각 군현에서 보고 되는 소식을 지방민이나 중앙에 통보하는 매체이다. 넷째, 邸報이다. 京邸에서 본 군에 알리는 보고 통지문으로, 신관 수령의 부임을 알리는 경우에 이용하였다. 다섯째, 政事이다. 조정의 인사 내용만을 게재하여 대량으로 복제하여 일반에게 배포하는 자료의 일종이다. 여섯째, 漢京報이다. 조보가 서울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일곱째, 京考 또는 시속신문이다. 낙향했거나 유배자들에게 정보를 수집하여 사노 등을 통해 전하는 것이다. 이외에 ‘京報’가 있는데, 이는 중국의 조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대 사용된 용어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京報’란 서책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경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이에 대

는 ‘기별청’이 설치·운영되었다. 중국에서도 운영되었으나, 일본에서는 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sup>15)</sup>

조보는 군주의 동정과 조정에서 시행한 공식적인 국정 운영 내용이 수록되어,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 보급되었던 일종의 관보였다. 승정원에서 주관하여 발행했는데, 국정 운영에 관심이 많았던 현직 관료 및 예비 관료층에게 보급되었다. 그리고 5일분씩 묶어 전국 각지로 배포되었다. 심지어 전쟁 중에도 발행되었을 정도로 항상성이 유지되었다.<sup>16)</sup>

무엇보다 교통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시기에, 조보가 경·외의 각 관청과 심지어 일촉즉발의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전쟁터의 수영까지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된다. 이는 조보에 대한 당대인들의 관심이 상당히 컸음을 의미한다. 국정 운영과 관련된 정보의 전달과 소통 기능의 역할 수행, 통치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조보는 언제부터 발행되었을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조보는 군주의 통치 행위가 말단 행정단위까지 파급되어 체제의 안정이라는 측면과 상하 소통의 기능을 수행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왕권 강화를 도모했던 역대 왕조에서 운영했을 것이라는 예단이 가능하다. 조보의 효용성을 알고 있는 지배층으로서는, 이의 발행을 주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선왕조 이전의 경우는 기록의 미비로, 조보의 발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조보 발행 시기를 추적해보자.

---

한 상세한 설명은 참고문헌 참조).

15) “통신정사 홍치중 부사 황선 종사관 이명언 등이 일본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일본의 사정을 파악하고자 했으나) 연경과 달리 본래 조보가 없고…’”(『숙종실록』 권 65, 46년 1월 24일(辛卯))라는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 『선조실록』 권59, 28년 1월 30일(癸卯).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보면, 조보와 관련된 용어는 태종 대 처음 확인된다. 세종 이후 연산군까지는 확인되지 않다가, 중종 이후 고종까지 역대 실록에서 모두 확인되고 있다.<sup>17)</sup> 이는 조선왕조 내내 조보가 발행되었다는 전제의 성립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현재 전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조보가 조선후기의 것이다 보니, 조선 초기 혹은 그 이전 어느 시기에 발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언하기 어렵다.<sup>18)</sup>

주지하듯이 중앙집권체제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전통시대에, 이의 실현에 조보가 필요하다는 함의가 이루어졌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군주의 동정 및 국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전달하여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요긴한 매체(조보)가 일찍부터 시행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적 및 사회적(교통로 등)인 면에서 볼 때, 결코 용이한 정책은 아니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문헌기록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문헌 기록이 풍부한 조선시대에는 조보 발행에 대한 사실의 추적이 가능하다. 이를 살펴보자.

실록에서 확인되는 조보의 첫 용례는 태종대의 다음 기사이다.

“(사)헌부에서 정부의 이방 녹사(吏房錄事)를 탄핵하였는데, 이달 16일 아조에 분발(分發)을 너무 늦게 한 것이 당상관들로 하여금 3엄(三嚴) 뒤에 예결하도록 만든 까닭이라고 하였다...”<sup>19)</sup>

17) 『태종실록』(1), 『중종실록』(15), 『명종실록』(4), 『선조실록』(58), 『선조수정실록』(5), 『광해군일기』 증초본(81), 『광해군일기』 정초본(71), 『인조실록』(32), 『효종실록』(10), 『현종실록』(4), 『현종개수실록』(4), 『숙종실록』(18), 『숙종보궐정오』(2), 『경종실록』(3), 『경종수정실록』(2), 『영조실록』(48), 『정조실록』(33), 『순조실록』(3), 『헌종실록』(2), 『철종실록』(4), 『고종실록』(14) 등.

18) 조정의 공식 일정을 알리는 최초 형태가 692년(신문왕 12)에 확인되는 설총의 이두에서 그 단서를 볼 수 있다는 주장(최준, 『한국신문사』, 일조각, 1960)이 있지만, 확증할만한 근거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 기사는 매달 닷새마다 임금에게 올리는 업무 보고에 승정원 서리(이방녹사)가 분발(급한 소식)을 늦게 전했기 때문에, 당상관들이 3업(조회나 임금의 거동 시 준비단계에서 올리는 세 번의 북소리)이 끝난 뒤에야 입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고위 관료들이 임금께 보고해야 하는 업무 시간에 맞추지 못하고 단체로 지각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므로, 담당 녹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사헌부의 주장이다.

이 기사의 ‘분발’은 ‘조보’의 다른 명칭 중 하나로, 정식 발행 전 회람용으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 조정에 있는 신하 중 조보를 제대로 보지 못해 관직에 제수되고서도 낙향했다는 기사<sup>20)</sup> 역시, 위 기사와 마찬가지로 정보 매체의 기본 속성인 신속성(정보성)이 담보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태종대의 기사만으로는 조보가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종종 3년의 다음 기사를 보자.

“... 지난번에 외방 수령들을 사태(沙汰, 선악을 가림)할 때에 신이 대신들과 더불어 둘러앉아 함께 의논했으니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사의(私意)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의 언사(言事)하는 사람이 오히려 공평하지 못했다는 의논이 있었으니, 일하기 어려움이 이와 같습니다. 신이 또 지난번에 북경으로부터 요동에 도착하여 조보(朝報)를 보니 논박을 받아 산관(散官)으로 된 사람이 많았습니다....”<sup>21)</sup>

이 기사는 대간(김안국과 이장곤)과 대신(성희안) 사이에 인사 문제로 벌어진 논란이다. 종종반정 이후 원종공신과 죽친에게 벼슬(공신책봉)이 더해진 것이 잘못이라는 대간의 비판이 제기되자, 그 일과 연루된 대신(성

19) 『태종실록』 권26, 13년 12월 16일(辛酉).

20) 『인조실록』 권34, 15년 3월 13일(壬子).

21) 『중종실록』 권5, 3년 3월 14일(辛亥).



희안)의 대응 내용이다. 성희안 자신은 인사 당시 개인적인 의견을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공평한 인사가 아니라는 대간의 주장에 의해 수령직에서 물러난 인사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사실은 성희안이 인사 조치와 관련된 사실을 중국(요동)에 있을 당시 조보를 보고서 알았다는 것이다. 성희안의 언급은 이 시기에 이미 조보가 발행되었고, 심지어 중국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일반화(널리 확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종 3년에 대간과 대신 사이에 벌어진 갈등 국면과 관련된 기사이지만, 전후시기에 조보가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근거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중종 10년의 기사를 보자.

“(권민수가 아뢰기를) 모든 가)국사가 비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승정원이 잘 단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득한 일이 있으면 바깥사람이 먼저 알고서 ‘오늘은 무슨 일을 의논하였다.’라고 합니다. 어찌 나라의 큰일이 이처럼 비밀이 지켜지지 않습니까? 또 논박을 받은 사람이 경연관의 집에 가서 묻기를 ‘오늘 누가 누구의 일을 아뢰었으며, 누가 나의 무슨 일을 아뢰었는가?’ 하니, 이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또 나)사관도 그 말을 누설하고 있어서 매우 사리에 부당하니, 정원에 하교하서 이런 폐단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조보는 예로부터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밀히 해야 할 일은 정원이 스스로 비밀을 지켜야 할 것이다.”<sup>22)</sup>

대사헌 권민수는 가)처럼 조보를 국사(사초)로 인식하면서, 비밀 유지와 엄정한 관리를 주장하였다. 이 일을 담당하는 관리(주서)를 사관이라고 칭함으로써, 주서의 작업을 사관의 활동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조보를 대하는 관료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22) 『중종실록』 권22, 10년 5월 2일(戊子).

주목되는 것은 증중이 언급한 다)의 표현이다. ‘예로부터’라는 표현은 7년 전인 증중 3년에 성희안이 요동에서 보았다는 것보다, 그 이전에 이미 조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보의 발행이 적어도 조선 초기 혹은 그 이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 보았던 태종대의 기사(분발)도 유의미하게 다가온다.

증중 15년 안당의 정승 추천과 관련된 다음 기사를 보자.

“근일 본부(의정부)에서 가)사록으로 하여금 항상 승정원에 출사하여 조보를 통보하도록 하자고 요청했으나 윤험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정부는 마땅히 온 나라의 일을 참여하여 알아야 하는 것이니, 혹 일을 의논할 경우 미리 생각해야 위의 하문에 답할 때에 찢찢매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방의 재변, 수재나 한재, 도둑 등의 일은 비록 예에 따라 관계되는 관청에 내리고 있으나 정부 역시 참여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예전에는 중서성이 정치하는 본부가 되어 모든 공사가 여기를 통해 출납되었는데, 다)지금은 승정원이 후설(喉舌)의 기관이 되어 그 출납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관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록 한 사람을 항상 승정원에 출사시키도록 의논드린 것인데, 출사하게 되면 한림 주서가 기사할 때에는 진실로 참여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무릇 조보의 기사에 대하여는 듣는 대로 통보하게 하는 것이 편리할 듯 하였으므로 전일에 이것을 아뢰었습니다. 라)조종조에서도 역시 한림 한 사람에게 항상 사록을 겸하도록 한 것이 아마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뒤 관제를 고칠 때에 폐지했는데 이미 폐지된 법을 비록 다시 세울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록을 항상 승정원에 출사케 해서 조보를 통보하게 한다면 신의 생각에는 사체에 방해되지 않을 듯합니다.”<sup>23)</sup>

23) 『증중실록』 권38, 15년 3월 26일(甲寅).

조금 길기는 하지만, 조보의 발행과 관련된 사실을 추적하는데 요긴하여 모두 인용하였다. 이 기사는 승정원의 실무관인 주서(윤구)가 당상관(승지, 신용개 등)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처리한 일에 대해 치죄 여부를 논의한 내용이다. 그런데 정승 추천과 관련된 논의 사실을 의정부에서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는데, 이는 의정부의 사록이 승정원 발행의 조보를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곤의 주장 중 나)의 ‘예전’이란 표현은, 중서성의 기능이 활발했던 고려시기로 보인다. 이는 결국 고려조에서 이미 조보를 발행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세조 12년 관제의 개편 이후, 승정원이 중서성의 기능을 대신하면서, 가)의 사록(정8품)의 기능이 사라졌으며, 그 결과 조보를 즉시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남곤의 주장에 대해, “옛날에는 비록 한림으로 사록을 항상 겸하도록 했으나, 관제가 이미 바뀌었으니 별도로 그 법을 세우는 것이 불가하다.”라고 중중이 답하였다. 이 표현도 관제 개편 이전, 즉 세조 12년 이전에는 녹사가 승정원에 가서 조보를 미리 보고 의정부에 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조선초기와 고려왕조에서 조보를 발행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명종 대의 ‘이달 8일의 조보를 보니’<sup>24)</sup>와 선조 대의 ‘어제의 조보를 보니’<sup>25)</sup>와 같은 기사는, 조선중기 이후 조보의 발행이 일반화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선조실록 수정 시 제기된, “선조 1년 이후 21년까지 내내 조보가 발행되었으니,”라는 이정구의 발언은 매우 주목된다. 이는 선조 재위 기간 내내 조보가 발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선조 재위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조보가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선왕조 내내 발행되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한다.

24) 『명종실록』 권13, 7년 5월 26일(丁未).

25) 『선조실록』 권93, 30년 10월 11일(戊辰), 권98, 31년 3월 24일(己酉) 등.

선조 30년 남이신의 언급(조보는 유래가 오래 되었으며, 난리 때나 播越 때에도 폐하지 않았으며, 이는 중국도 알고 있음)<sup>26)</sup>과 고종 대 『승정원 일기』의 보충과 관련된 논의 시 표현(사대부 집안에는 왕조를 세운 이래의 조보와 정목을 베껴둔 것이 있다고 한다. 일찍이 승지를 지낸 사람 집에 혹시 있을 수 있으니 널리 물어서 각사의 기록 중 누락된 것을 보충...)<sup>27)</sup> 등도 일찍부터 조보가 발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고종 대 ‘왕조를 세운 이래’라는 표현은 조보의 발행이 조선왕조 내내 추진되었음을 의미한다.

### III. 조보의 내용

조보의 발행은 승정원에서 주관하고, 제작은 조보소(기별칭)에서 하였다. 기별서리<sup>28)</sup>가 직접 승정원에 와서 필사했으며, 필사된 조보는 奇別軍士<sup>29)</sup>를 통해 전달되었다. 중종 18년의 “各司 서리가 조보한 일을 살펴보면 ...”<sup>30)</sup>과 같은 기사 역시, 각 관청과 일부 관료들은 직접 서리를 보내서 필사해 가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보는 매일 오전에 발행되었다.<sup>31)</sup> 특별한 경우 저녁에 발행되는 경우<sup>32)</sup>

26) 『선조실록』 권 89, 30년 6월 12일(辛未).

27) 『고종실록』 권11, 11년 2월 5일(戊寅).

28) 『육전조례』, 예전 규장각조에 조보를 제작하는데 관여한 승정원의 관리와 이를 베껴 쓴 기별서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기별서리를 현재의 편집자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차배근, 「우리나라 조보의 신문학적 분석고」, 『서울대 신문연구소확보』 17, 1980), 이들이 승정원에 편성된 서리인지, 아니면 그중 일부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29) 奇別使令 또는 朝報軍士라고 불렀다. 당상관에게는 전속 기별군사가 있었고, 각 기관에도 있었다(『추관지』, 제1편 경용).

30) 『중종실록』 권48, 18년 5월 28일(丁酉).

도 있었지만, 대체로 오전에 발행되어 전날 저녁부터 밤사이 및 당일 아침까지의 사실이 포함되었다. 첫머리에 날짜가 표기되었지만, 별도의 제목은 없다. 왕실 및 중앙 관서에는 기별군사를 통하여 즉시 전달되었으며, 지방에는 5일 분씩 모아서 역참 또는 경주인을 통하여 배포되었다. 따라서 지방의 경우, 정보의 시의성이 떨어지고 조정의 지시나 전달 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지방에 보내는 조보는 봉투의 앞면에 ‘某官開折 承政院公事’라고 쓰고, 뒷면에 ‘某年某月某日以某日至’라고 표시하였다.<sup>33)</sup>

승정원 이외의 각 관청에서도 자기 부서에서 수행했던 내용 중심으로 별도의 전달 매체를 발행했던 것으로 보인다.<sup>34)</sup> 선조 37년 사헌부 장령 채형이, ‘본부(사헌부)의 조보’<sup>35)</sup>라고 한 표현과 광해군 5년 ‘성균관의 조보’<sup>36)</sup> ‘충훈부의 조보’<sup>37)</sup> 등과 같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보에 수록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조보에는 관리의 임면·이동·승급 등 인사 관계 소식과 국왕의 동정, 경연 개최 여부, 과거의 실시 여부와 관리의 사망 사실,<sup>38)</sup> 내농작과 관련된 사실,<sup>39)</sup> 기묘사화 당시 형을 받은 이의 서계,<sup>40)</sup> 평안도 지역의 질병 관련

31) 조보가 매일 발행되었음은, “조보를 연일 보건대,”(『효종실록』 권19, 8년 9월 5일(甲辰)), “날마다 양사가 논한 사실이 조보에 기재되어,”(『현종실록』 권6, 4년 1월 16일(乙酉)) 등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2) ‘어제 저녁에 본 조보’라는 표현(『선조실록』 권7, 6년 9월 9일(丙戌))에서 확인할 수 있다.

33)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34) 규장각과 국민대학교 박물관 소장 조보 중 ‘弘文館 公事’란 제목의 조보는 홍문관에서 발행한 것을 의미한다.

35) 『선조실록』 권180, 37년 10월 25일(辛未),

36) 『광해군일기』 중초본 권68, 5년 7월 27일(癸未),

37) 『영조실록』 권83, 31년 2월 24일(戊辰).

38) 오늘날의 신문에 있는 부고 소식과 유사하다고 본다.

39) 『중종실록』 권46, 18년 1월 2일(甲辰).

기사<sup>41)</sup> 등 매우 다양한 국정 시행사가 수록되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상소도 게재되었는데,<sup>42)</sup> 군주가 직접 확인(啓下)하지 않은 것은 제외되었다.<sup>43)</sup> 군주의 동정은 건강 여부까지,<sup>44)</sup> 세자빈의 간택 날짜<sup>45)</sup>와 모역 사실,<sup>46)</sup> 공초 내용<sup>47)</sup>과 조정의 정령,<sup>48)</sup> 관료의 휴가<sup>49)</sup> 등 매우 광범한 내용이 수록되었다. 특히 국왕의 즉위와 관련된 대왕대비의 언문교지를 번역 후 수록하기도 했다.<sup>50)</sup>

관리의 범죄 처리 여부<sup>51)</sup>와 유배자의 해배 소식,<sup>52)</sup> 자연재해<sup>53)</sup>도 상세하게 게재되었다. 천재지변과 관련된 기사는 천인합일사상으로 천견을 중시했던 사상과 무관하지 않다.<sup>54)</sup> 그런데 지나친 천재지변 사실의 수록은 인심의 동요를 유발할 수 있으니 모두 신지 말자는 건의도 있었다.<sup>55)</sup> 조정의 정국 운영 사항과 더불어 집권 지배층의 유교 윤리관과 사회관, 세계관 등이 녹아 있는 소통 도구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하튼 관료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이 조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만한 내용들이 수록되었던 것

40) 『중종실록』 권48, 18년 5월 20일(己丑).

41) 『중종실록』 권52, 19년 12월 9일(己亥).

42) 『광해군일기』 중초본 권171, 13년 11월 20일(丁巳).

43) 『선조실록』 권119, 32년 11월 16일(辛酉).

44) 『선조수정실록』 권6, 5년 7월 1일(甲申)과 『효종실록』 권2, 즉위년 9월 1일(丁巳).

45) 『광해군일기』 중초본 권51, 4년 3월 26일(庚申).

46) 『광해군일기』 중초본 권54, 4년 6월 7일(庚午).

47) 『광해군일기』 중초본 권66, 5년 5월 24일(辛巳).

48) 『인조실록』 권5, 2년 3월 25일(己卯).

49) 『인조실록』 권35, 15년 9월 10일(乙亥).

50) 『현종실록』 권1, 즉위년 6월 9일(乙亥).

51) 『명종실록』 권13, 7년 5월 26일(丁未).

52) 『명종실록』 권32, 21년 4월 11일(壬申).

53) 『효종실록』 권19, 8년 9월 5일(甲辰)과 『효종실록』 권20, 9년 10월 20일(癸未).

54) 현전하는 각종의 일기에도 날씨 변화는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조선의 선비들에게 공통적으로 작용한 유교사상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55) 『인조실록』 권10, 3년 9월 26일(辛亥).

이다.

작성 시 기본적으로 한자를 작성하되 이두를 보조적으로 활용했으며,<sup>56)</sup> 서체는 매우 독특하여 기별 글씨라고 하는 독특한 흘림체하였다. 이를 ‘기별체’라고 하는데, 매우 거칠게 작성되어 초서체로 작성된 일반 고문서<sup>57)</sup>보다 훨씬 읽기 어려웠다. 짧은 시간에 많은 기사 분량을 복제해야 하고, 속필하는 과정에서 이들만의 독특한 글씨체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sup>58)</sup>

그런데 모두 흘림체인 것은 아니었고, 특별한 경우에는 정서체로 작성되기도 하였다. 국가 문서를 보존하였던 규장각에 정서 기별서리 3인이 배치되어 있었고,<sup>59)</sup> 이들로 하여금 보존용 ‘정서조보’를 만들도록 하였다. ‘규장각에 보관된 정서로 쓴 조보’<sup>60)</sup>라는 표현과 ‘인조부터 翼宗까지의 정서 조보’<sup>61)</sup>란 기사는 정서 조보의 실체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세자나 세손의 교육기관인 시강원이나 강서원에도 정서 기별서리가 배치되어 국왕이나 세자, 세손에게 제공되었다.<sup>62)</sup>

이와 같이 관료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이 조보에 수록되었지만, 국정의 동향에 집착하지 말고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경우도 있

56) 김상호, 『조선시대 공문서관리』, 『서지학연구』 창간호, 1986.

57) 사관이 작성한 ‘입시사초’의 경우도 매우 읽기 어려운 초서체였는데, 조보는 이보다 더 읽기가 까다롭다.

58) 선배 궁녀가 후배 궁녀에게 전수했던 궁녀체나, 속기사들만의 독특한 속기체가 별도로 전해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59) 『육전조례』 예전 규장각조.

60) 『고종실록』 권10, 10년 11월 9일(甲寅).

61) 『고종실록』 권21, 21년 8월 3일(甲戌).

62) 1883년에 발행된 한성순보의 신문 규정에도 정서 조보를 매일 승정원에서 박문국으로 보내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로 보아 규장각이나 왕실 이외에도 공공이용을 위해 정서 조보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한성부신문장정』, “正書朝報一件 每日自承政院于本局以爲 要登印.”).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조보 중 ‘春坊所藏’이라고 된 것은 이를 의미한다.

다.<sup>63)</sup> 선조 대 종계변무의 공으로 광국공신에 책봉된 황정옥은, ‘서생이 책을 읽고 옛날을 배우면 그만이지, 조정의 일(조보)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sup>64)</sup>라고 하면서, 후손들에게 조보 열람을 강력하게 금지시켰다. 이는 황정옥 본인이 1589년 정여립 모반사건과 임진왜란 당시 순화군을 모시고 의병 모집 중 체포되어 항복권유문 작성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즉 당대의 민감하고 중요한 현안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 조보의 열람 자체가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당대의 관심 사항 일체가 수록된 조보를 하루 동안의 공개용 실록이라고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 민감한 사안이 수록된 만큼, 관료들 외에 일반 백성들도 관심을 기울였음은 물론이다. 민간에 유통되었던 사례를 살펴보자.

1578년(선조 11) 중국에서 통보(通報)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일부 서울의 유수배(遊手輩, 민간업자)들이 생계를 위해 조보의 인쇄를 허가받은 후 각 관청과 지방에 판매하였다.<sup>65)</sup> 활자를 새기고 조보를 인쇄하여 각 관청과 지방의 저리(邸吏)들에게 판매하니 사대부들이 편리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두어 달 정도 시행했는데, 이를 우연히 본 선조는 “조보의 발행은 史局을 私設하는 것이다. 만일 다른 나라에 전파된다면 이는 나라의 잘못을 선전하는 것”이라며 화를 내고,<sup>66)</sup> 더 이상 민간에서 발행하지 못하도록 중단시켰다. 당시 선조는 ‘조보를 古史처럼 인출하니 놀라우며, 반드시 잡아서 죄로 다스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印出을 위해 새긴 글자(활자)는

63) 대체로 현실 정치에서 밀려나 유배되었을 경우, 조정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일 자체가 오해를 부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64) 『지천집』, 권4, 성수의 묘지명.

65) 『울곡선생전서』 권30, 경연일기 3 및 『연려실기술』 별집 권13, 정교전고.

66) 『연려실기술』 별집 권13, 정교전고.



모두 沒入하라며, 이듬 해 1월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갔다. 사간원에서 생계를 위한 일이니 놓아주자고 건의하자, 뒤에서 조종하는 무리가 있을 것이며, ‘큰일’이라고 강조하였다. 조보의 사적인 발행(유통)에 대한 선조의 태도가 매우 강경했음을 알 수 있다.<sup>67)</sup> 결국 이일로 연관된 인사 30여 명은 귀양 갔다.<sup>68)</sup>

광해군 대에도 일반인들 대상으로 조보의 복제와 배포 행위가 있었다. 하급 서리들이 조보를 서로 전하며 베풀었다는 기사와<sup>69)</sup> 개인적인 이익도 목적으로 조보의 인사 내용과 국가 기관에 관한 일을 빼껴서 다른 나라에 누설했다는 기사<sup>70)</sup>가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보의 복제품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글씨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어느 정도 복제되었으며, 구독료(판매 가격) 등은 여전히 궁금하다. 여기에 사족들과 일반 백성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기사 내용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외에, 일상적인 사항까지 수록되었는지 여부 역시 향후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시간의 고금을 막론하고 전·현직 관료들은 정국의 동향과 인사 등 국정 시행사에 대해 대단히 민감했다. 정국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관료 사회로 진출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초나 실록 등 당대사를 기록한 문서를 직접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조보의 기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보 매체였다. ‘신(김치인)이 조정에 나오지 않은 이후로는 다만 문드러진 조보만 의지할 뿐이어서...<sup>71)</sup>’라는 고백에서, 조보의 효용성을 살필 수 있다. 위험 부담이

67) 『선조실록』 권12, 11년 1월 15일(丁卯).

68) 『선조실록』 권11, 10년 11월 28일(庚辰). 이 시기 발행된 인쇄본 조보에 대한 영천 역사문화박물관 주최의 세미나가 있었고, 당시 발표자들은 이를 세계 최고의 ‘인쇄본 신문’이라고 주장하였다(경북유형문화재 제521호 민간인쇄조보 학술세미나, 2019.11.28.).

69) 『광해군일기』 중초본 권24, 2년 1월 11일(戊子).

70) 『광해군일기』 중초본 권25, 2년 2월 11일(丁巳).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보를 복제해서 배포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이유이다. 이는 현실 정치 상황에 민감했던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지적 욕구와 무관하지 않은 행동으로 이해된다. 그러다보니 정조는 오히려 조보의 활자 인출을 주장하기도 했다.<sup>72)</sup> 조보 발행 시 일부 비밀스런 사항은 제외되기도 했다. 이를 살펴보자.

중종 18년 지방관의 비리를 살피기 위하여 어사를 파견하였을 때, 그 내용을 수록한 조보가 미리 누설됨으로써 본래의 의도가 상실되었다는 기사<sup>73)</sup>가 있다. 명종 때에는 봉당을 조성하였다는 죄목으로 유배되었던 최우(?~?, 본관: 화순)가 빈번하게 서울을 출입하며 빈객을 접대하기도 하고, 조보를 빌려 보면서 조정의 사정을 탐지하였으므로, 외방에 귀양 보내야 한다는 기사가 있다.<sup>74)</sup>

중국 장수가 아직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 비밀이 누설될 수 있으므로 조보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였고,<sup>75)</sup> 사신이 국경에 머물러 있으므로 국정 비밀 기사를 삭제하도록 하거나,<sup>76)</sup> ‘남한산성과 강화도에 甲冑 수송 시 청이 알지 못하도록 조보에 내지 마라’,<sup>77)</sup> 중국 사신과 관련되어 꺼려야 할 일은 대간의 계사도 封入하고 조보에 신지 말라고 했다.<sup>78)</sup> 국정 운영과 관련된 비밀사항이 중국에 유출되지 않도록 했던 조치였다.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사실이 수록되었던 만큼, 조보의 유출로 인하여 국가 기밀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발행 후 遠近이 모

71) 『정조실록』 권22, 10년 10월 27일(丁卯).

72) 『정조실록』 권1, 즉위년 5월 25일(乙未).

73) 『중종실록』 권48, 18년 5월 28일(丁酉).

74) 『명종실록』 권27, 16년 5월 28일(丁亥).

75) 『선조실록』 권185, 38년 3월 17일(辛卯).

76) 『광해군일기』 중초본 권15, 1년 4월 5일(丙辰).

77) 『인조실록』 권48, 25년 11월 10일(丙午).

78) 『광해군일기』 중초본 권17, 1년 6월 2일(辛亥)과 1년 6월 9일(戊寅).

두 보고 듣게 된다는 기사<sup>79)</sup>처럼, 조보는 기본적으로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컸다. 그만큼 국가 기밀의 누설 우려는 상존했다. '外人이 알까 두려우니 조보에 내지 말라<sup>80)</sup>'는 선조의 지시와 군국 기밀사를 승정원에서 자세히 살피지 않고 조보에 냈으니, 담당 승지(색승지)와 승지를 추고하라는 사헌부의 요구를 선조가 수용한 것<sup>81)</sup> 역시, 공개되지 말아야 하는 사실까지 기사화되는 일이 빈번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조보의 엄정한 관리에 대한 논의는 현안의 하나였다.

선조 28년 조보에 수록되기 전 비밀 狀啟를 누설한 일,<sup>82)</sup> 사건 처리 사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조보에 게재한 일<sup>83)</sup>로 담당 승지의 체직과 추고를 명한 기사 역시 조보의 엄정한 관리와 직결된다. 광해군 10년에는 의금부에 구속 중인 죄수에게 조보와 분발을 전해준 일로 파수별장고 선전관과 포도군관 등이 파직된 일<sup>84)</sup>이 있었다. 조보와 정목을 백금 50·60냥에 왜인에게 팔아넘기는 潛商의 행위가 있으므로 경상 감사에게 금지시킨 일과<sup>85)</sup> 조보에 수록되지 않은 경연에서의 말이 사전에 누설된 사실에 대해 담당 주서와 사관을 추고했던 사실<sup>86)</sup>에서도 조보의 엄정한 관리를 이해할 수 있다. 즉 당대인들의 조보에 대한 큰 관심과 합법 및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유통시키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보는 일반 백성보다 경·외의 각 관청과 전·현직 관리, 그리고 사대부 양반 등 지배층이 주로 이용했다. 읽기 어려운 글씨체로 필사되었기 때

79) 『선조실록』 권220, 41년 1월 28일(丙辰).

80) 『선조실록』 권53, 27년 7월 17일(癸巳).

81) 『선조실록』 권65, 28년 7월 15일(丙戌).

82) 『선조실록』 권65, 28년 7월 14일(乙酉).

83) 『인조실록』 권27, 10년 11월 17일(辛亥).

84) 『광해군일기』 중초본 권132, 10년 9월 12일(丁酉).

85) 『광해군일기』 중초본 권163, 13년 3월 11일(癸丑).

86) 『효종실록』 권5, 1년 윤11월 22일(辛丑).

문에 일반 백성은 읽고 싶어도 읽기 어려웠으며, 한정된 수량이었기 때문에 구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일반 백성들에게도 조보를 배포되기도 했다.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적의 동향을 기록한 황신(1560~1617, 본관; 창원)의 서장(書狀)을 조보에 기재한 일이 있었다.<sup>87)</sup> 긴박한 전쟁 상황에서, 민심의 동요를 막을 수 있는 기사는 적극 게재하여 활용하려는 의도였다. 일반인이 읽을 수 있는 평이한 글씨(언문)로 작성되었는지는 전해지는 것이 없어 알 수 없지만, 일반 백성을 위한 조보의 실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일반 백성의 집에 소장된 조보나 장주(章奏)를 수집하였다는 인조 11년의 기사<sup>88)</sup>를 통해, 일반인의 조보 소장과 열람이 가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범하게 일반화된 것은 아니지만, 조보가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유포되었으며,<sup>89)</sup> 어느 정도 대중 매체로서의 기능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당시 남해안에서 전쟁을 수행 중이던 이순신에게도 조보가 전달되었다. 7년 동안의 전쟁 기간 내내 자신이 겪은 공적인 면과 사적인 면을 망라하여 일기를 작성했던 이순신은 다섯 번에 걸쳐 조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하였던 것이다.<sup>90)</sup> 일기에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아, 그가 수령했던 조보에 수록된 내용은 자세하지 않다.

이순신이 수령한 다섯 건의 조보의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1593년에 수령한 두 건이다. ‘관보를 가지고 왔기에 들여다보니, 통분함을 이기

87) 『선조실록』 권83, 29년 12월 5일(丁卯)과 8일(庚午).

88) 『인조실록』 권28, 11년 9월 2일(辛卯).

89) 1577년(선조 10) 민간에서 발행한 조보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경북유형문화재 제521호 민간인쇄조보 학술세미나, 2019).

90) 『난중일기』 1593년 5월 28일, 7월 6일 및 1595년 2월 25일, 11월 1일 1596년 2월 18일 등.

지 못하겠다.<sup>91)</sup>와 ‘승정원의 저보(邸報)도 왔는데, 이를 보니 탄식할 만한 일이 많았다.’<sup>92)</sup> 등이다. 다른 것에 비해, 이날 수령한 조보의 내용이 이순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거친 내용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통분’, ‘탄식’과 같은 표현을 볼 때, 조보에 수록된 내용, 즉 조정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이순신이 조보를 수령했다는 것은 전쟁 중에도 조보가 발행되었다는 사실과 전쟁 현장까지 전달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IV. 조보의 사료적 가치

국정 시행사와 관련된 사실이 반영되어 서울과 지방까지 배포되었던 조보는, 당대 사실의 확인에 기록(물)이 지니는 의미와 상호 관련성을 밝히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실록 편찬 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사료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달 8일의 조보를 보니’,<sup>93)</sup> ‘어제 조보를 보니’,<sup>94)</sup> ‘승지만 알고 조보에는 내지 말라’<sup>95)</sup> 등과 같은 기사는, 조보에 실린 내용이 실록에 그대로 수록되었음을 보여준다. 조보와 실록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소중하다. 실록에는 통상 본문과 세주(細註), 사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주가 결재한 것은 모두 조보에 수록해야 한다.’<sup>96)</sup>는 영의정 이광좌의 언

91) 『난중일기』 1593년 5월 28일(辛巳).

92) 『난중일기』 1593년 7월 6일(戊午).

93) 『명종실록』 권13, 7년 5월 26일(丁未).

94) 『선조실록』 권93, 30년 10월 11일(戊辰).

95) 『선조실록』 권127, 33년 7월 5일(丙午), 7월 17일(戊午).

급과 ‘사관으로 하여금 청사(靑史)에 쓰게 하고 정원으로 하여금 조보에 반포하게 하라.’<sup>97)</sup>는 영조의 말을 통해, 조보와 실록의 긴밀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조보를 사초와 동일하게 인식한 사실을 보자. “신(이식)은 병으로 일을 살피지 못하고 바깥의 새로운 논의도 듣지 못하다가 우연히 조보를 보니, 헌납 김반이 신이 했던 말을 따다가 엄하게 책망한 것을 보았습니다....”<sup>98)</sup> 라는 기사는, 당대사의 이해에 조보가 매우 요긴한 근거였음을 보여준다. 요즘도 신문에 특정인에 대한 시비득실이 논평되는 것처럼, 조보에도 동일하게 시비득실이 수록되었다. 신문의 인물평이 정당의 이념에 따라 다르듯이, 당파 갈등이 심했던 조선시대에는 더욱 심했다. ‘조보를 볼 때도 당론이 있으면 불만한테 당론이 없으면 맛이 없다.’<sup>99)</sup>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의 기사 중 (필사)조보를 의미하는 용어는 조보(442건), 조지(朝紙 172건), 저보(邸報 63건), 기별(奇別 41건), 분발(分發 18건), 난보(爛報 12건), 경보(京報 7건), 경기(京奇 2건) 등 매우 다양하다.<sup>100)</sup>

당대 국정 운영과 관련된 민감한 사실이 수록되어 있는 조보는, 요즘으로 본다면 일종의 관보라고 할 수 있다. “박여량이 조보를 신(정인홍)에게 보여주었는데, 신으로 하여금 시사가 어떠한 가를 알게 하려고 그런 것...”<sup>101)</sup>이라는 기사를 보면, 시사성이 컸던 조보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당시 국정 운영 사실이 그래도 수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96) 『영조실록』 권2, 즉위년 11월 5일(乙巳).

97) 『영조실록』 권103, 40년 2월 23일(乙巳).

98) 『인조실록』 권14, 4년 8월 29일(戊辰).

99) 『영조실록』 권87, 32년 2월 18일(丙辰).

100) 김영주, 「조선조 민간인쇄조보의 몇 가지 쟁점」, 『언론학연구』 3, 1999.

101) 『광해군일기』 증초본 권57, 4년 9월 22일(癸丑).

조보는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신문의 초기 형태로서, 무엇보다 실록(사초)의 열람이 용이하지 않았던 시대에 당대사 이해에 요긴한 역할을 수행했다. 군주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사관의 사초가 철저한 비밀주의 원칙이었던 것에 비해, 조보는 공개성이 담보된 사초였던 것이다. ‘조보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다.’<sup>102)</sup>는 표현은 조보의 정보 확장성을 잘 보여준다.

이제 실록과 조보의 상관성을 살펴보자. 이 작업은 실록 편찬 시 조보가 매우 중요한 자료의 하나로 활용되었다는 전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실록의 편찬 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사초와 각사 등록류 등 관 주도의 편찬물이었다. 그런데 내우와 외환으로 관찬 자료가 망실되었던 시기에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집이나 일기류를 비롯하여 편년순으로 국정 시행사가 수록되어 발행되었던 조보<sup>103)</sup>가 요긴하게 활용되었다.<sup>104)</sup>

“모든 가)국사(朝報: 필자)가 비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승정원에 서 잘 단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議得한 일이 있으면 나)바깥사람이 먼저 알

102) 『영조실록』 권25, 6년 2월 10일(己酉).

103) 조보의 개인(혹은 기관) 소장은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도서관과 개인 가문에 소장된 조보를 볼 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관청과 개인의 소장을 금지한 것 같지는 않다. 소장처의 의지에 따라 보존 여부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는 오늘 현재 도서관에서 신문을 합철해 놓은 것과 다르지 않다. 당대 사실을 확인하는데 신문의 기사를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경우라고 본다.

104) 필자는 교사(敎史) 편찬에 여러 번 참여한 적이 있었다. 학교에서 소장하던 공문서의 경우, 보존 연한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따라서 대학사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의 교사 편찬이 용이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 자료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교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관련 자료와 더불어 가장 요긴하게 활용한 것이 바로 대학신문(대학 소식지)이었다.

고서 ‘오늘은 무슨 일을 의논하였다.’라고 합니다. 어찌 다)나라의 큰일이 이처럼 비밀이 지켜지지 않습니까? 또 논박을 받은 사람이 경영관의 집에 가서 묻기를, ‘오늘 누가 누구의 일을 아뢰었으며, 누가 나의 무슨 일을 아뢰었는가?’하니,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또 라)사관도 그 말을 누설하고 있어서 매우 사리에 부당하니 정원에 하교해서 이런 폐단이 없게 해야 합니다.”<sup>105)</sup>

가)의 ‘국사’란 표현은 조보에 수록된 기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는 조보의 내용이 공식적인 경로보다 사적으로 먼저 알려져 군주의 조치 등 국정의 입안과 집행 관련 사실이 사전에 누설되고 있음을 경계하는 내용이다. 조보에 수록된 내용을 다)의 기사처럼 ‘나라의 큰일’이라고 한 것은, 사초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의 ‘사관의 누설’이라는 표현은, 주서가 조보에 수록할 기사를 사전에 알리는 경우를 지적한 것이다. 다)와 마찬가지로, 조보(제작)를 사초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후(주서)의 직임은 기주(記註)를 주관하여 군주의 언행과 국가의 정사를 기록하니 한원(翰苑, 사관)에 버금가는 막중한 임무’<sup>106)</sup>라는 표현과 일치한다.

광해군 초기 임진년 이전의 실록 수정을 위해 자료 수집에 대한 총재관 이항복의 계, “...고 감사 배삼익의 집에 병란 이전의 연도별 조보, 고 판서 이기, 고 첨지 이수준의 집에 병란 이전의 조보가 보관되어 있으며, ...”<sup>107)</sup>와 “이미 승정원일기에 실렸으니, 조보에 나지 않았겠는가?”<sup>108)</sup>라는 영조의 언급은 『실록』과 『승정원일기』의 수정에 조보가 상당히 중요하게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광해군일기』의 편찬을 위하여 양사 및 사대부

105) 『중종실록』 권22, 10년 5월 2일(戊子).

106) 『인조실록』 권19, 6년 11월 21일(戊寅).

107) 『광해군일기』 중초본 권21, 1년 10월 5일(癸丑).

108) 『영조실록』 권23, 5년 7월 6일(己酉).



의 집에 소장하고 있는 조보<sup>109)</sup>와 각 관청에 있는 조보<sup>110)</sup> 등을 거두어들이었다는 기사 역시 동일한 사례이다.

여하튼 조보에 수록된 다양한 내용은 당대 역사를 밝힐 수 있는 공개성이 담보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외침과 내란 등으로 사초가 소실되어 실록의 편찬 자료가 부족했을 당시 조보가 적극 이용되었는데, 이는 사료로서의 가치에 대해 당대인들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대체로 관찬사서 및 공문서류의 경우, 공적인 편찬의도(혹은 집권층의 사적인 의도)와 해당 부서와 연관된 내용 위주로 기록되는 한계가 있다.<sup>111)</sup> 이에 비해, 공개할 의도로 제작된 조보는 당대의 국정 운영 사실이 가감 없이 수록되었다. 그런데 비밀이 보장된 실록의 편찬에 조보가 활용되었다는 것은, 당대사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더군다나 조보의 잘못된 기사를 삭제하여 나라의 체면을 높이고 백성들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상소<sup>112)</sup>는 조보가 사서의 영향력과 다름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사초와 동일하다는 인식과 다르지 않다. 조보 인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史局을 私設化’라고 표현했던 선조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다음 기사를 보자.

“...(정경세 啓) ‘나라에 역사가 있는 것은 관계된 바가 매우 중합니다. 나라  
는 망할 수 있으나 역사는 없을 수 없습니다. 당대 20여 년 동안의 일기가 병화  
가 스쳐간 통에 남김없이 산실되었으니, 극히 한심합니다. 춘추관으로 하여금

109) 『인조실록』 권5, 2년 4월 11일(甲午).

110) 『인조실록』 권5, 2년 5월 5일(戊午).

111) 이 문제는 사서의 편찬이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 공평한 입장을 견지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혹은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는 전제와도 연관된다.

112) 『정조실록』 권39, 18년 1월 24일(壬子).

상의하여 사료를 수습케 하고, 지방의 수령으로서 춘추관원을 겸하는 규정이 있으니 그 중에서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을 골라서 춘추 관원의 직임을 겸하도록 하며, 또한 잘 생각하여 기록해 약간 두서를 이룰 수 있게 한다면 전연 모양을 갖추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고, (박흥로 啓) '사관이나 겸춘추를 지낸 사람에게 만일 가장된 일기가 있으면 빨리 수습하여 민멸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정형은 병자년 간으로부터 조보에서 유관한 것을 뽑아 일기를 만들었는데, 지금 춘추관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또 찾는다면 어찌 소득이 없겠습니까.'...(김신국 啓) '兩湖와 關西의 병화를 겪지 않아 완전한 지방에는 반드시 병란 이전의 조보·정목 및 개인 일기가 있을 터이니, 성실한 사람을 보내어 다방면으로 찾아내게 한다면 반드시 소득이 있어서 두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sup>113)</sup>

임진왜란으로 사초 등 많은 사료가 소실되자, 이의 보완과 편찬을 위한 논의 시 기사이다. 임진왜란 발생 후 4년이 지났을 때의 상황이고, 전쟁 중에 사관이 사초를 불태우고 도망갈 정도로 사료의 망실이 엄청났다.

사료의 망실에 대한 관료들의 대안은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검토관 정경세는 당대 20여 년의 일기가 전쟁으로 산실되었으므로, 춘추관과 지방 사관(外史)<sup>114)</sup>에게 명하여 사료를 수집해야 한다고 하였다.<sup>115)</sup> 전쟁 당시 직접적인 피해가 덜했던 지방에 소실되지 않은 자료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제안이다. 시독관 박흥로는 기사관 김신국 등 사관을 역임한 인사의 집에 보관한 일기(家藏日記, 가장사초)나 조보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수집한다면 실록의 편찬 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113) 『선조실록』 권60, 28년 2월 8일(辛亥).

114) 김경수, 「조선조 외사의 설치와 운영」, 『역사학보』 154, 1997.

115) 그의 말 중에 '나라는 망할 수 있어도 역사는 없을 수 없다'라는 표현은 일제하 민족주의 사학자 박은식의 사관과 일치하고 있어 주목된다.

兩湖와 關西 지방은 전쟁의 피해가 덜하니, 성실한 사람을 보내 전쟁 이전의 조보와 정목, 私草日記를 찾는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김신국의 주장 역시, 조보가 당대사의 이해와 정리에 요긴한 자료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조보를 사초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조실록』 수정 당시의 논의 내용을 보자.

『선조실록』의 수정에 사용된 자료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조정에 남아 있던 자료 중 『승정원일기』와 조보 및 史庫에 보관 중인 실록이었고, 다른 하나는 민간에 남아 있던 자료였다. 특히 『선조실록』의 수정을 발의하던 무렵에 『승정원일기』와 무진년(1568년 선조 1)부터 무자년(1588년 선조 21)까지의 조보가 남아 있으니 이를 수정의 참고 자료로 삼자는 이정구의 의견이다.<sup>116)</sup> 더불어 전라 감사에게 보낸 공문의 내용을 보면, 당시 조보가 상당히 중요하게 이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17)</sup> 사초가 소실되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지만, 조보가 실록의 편찬 시 중요하게 이용되었음과 둘 사이의 상관성(연관성)이 상당히 긴밀했다는 것을 실체적으로 증명한다.

이 시기 춘추관에서는 사관이 아니더라도 산림에 있는 선비가 정리한 야사가 있다면, 각도 감사가 수집하여 보고해야 한다고 하였다. 춘추관 영사와 감사 역시, 임진년 병란으로 당대 20여 년의 일기가 사라져 남은 것이 없으니, 전쟁 전의 조보·정목이나 상소, 혹은 일찍이 사관을 지낸 자의 집에 간직한 일기 등을 수집하여 보완하자고 하였다.<sup>118)</sup>

인조 2년 이괄의 난이 발생했을 때, 승정원에서 임진년의 전례에 따라 가주서 1명을 선발하고 수정을 위해 조보를 수집하자는 의견<sup>119)</sup>과 춘추관

116) 『인조실록』 권2, 1년 8월 18일(丙子).

117) “…宣祖朝實錄修正時考閱次 以道內光州地故鄭大學家 去丙申丁酉戊戌己亥庚子辛丑壬寅等年 朝報藏在云 考閱後還送次…”(『수정청의궤』, 移文帙 丁酉 정월 27일, 전라감사에게 보낸 관문).

118) 『선조실록』 권64, 28년 6월 7일(戊申).

에서 시정기의 수정을 위해 겸춘추 2인을 선발하여 각처의 조보를 수집하도록 요청<sup>120)</sup>한 기사 등은 『광해군일기』의 편찬과 직결된 사안이었다. 또한 승정원의 서리 홍덕린이 『승정원일기』 26권과 광해군 대 조보를 안전 한 곳에 옮겼기 때문에, 난을 평정한 후 『광해군일기』의 편찬이 가능했다고 한 언급<sup>121)</sup>이 있다.

『승정원일기』 중에는 우부승지 및 봉교 등의 인사 내용<sup>122)</sup>과 이조판서 이광정의 체직에 대한 근거를 사가에서 찾았다는 기사가 있다.<sup>123)</sup> 1592년 이후 1721년 사이 1796권 중 1793권이 소실되었으니, 이 시기의 『승정원일기』 편찬을 위해 조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사<sup>124)</sup>는 『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 마찬가지로 『승정원일기』의 편찬 과정에서도 조보가 상당히 중요하게 활용되었음을 잘 보여준다.<sup>125)</sup>

이상과 같은 논의가 있던 시기는 외침 혹은 내란 중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전쟁 후 소실된 사료의 수집을 위한 논의이기는 하지만, 지배층이 조보를 사초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과 당대사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된다. 역사의 현재적인 이해의 측면이 강하지만, 조보와 실록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사학사적인 면에서 불

119) 『인조실록』 권5, 2년 4월 11일(甲午).

120) 『인조실록』 권6, 2년 5월 5일(戊午).

121) 신석호, 「승정원일기」, 『한국의 명저』, 현암사, 1982.

122) “以鄭弘翼爲右副承旨, 張維爲奉教, 辛啓榮爲待教, 洪命元爲京畿監司 - 出延興府院君家日記所瞻朝報”(『승정원일기』 인조 1년 3월 14일(甲辰)).

123) 吏判李光庭辭遞 - 出故監司尹安國私家日記所瞻朝報(『승정원일기』 인조 1년 3월 15일(乙巳)).

124) 『영조실록』 권63, 22년 5월 20일(乙卯).

125) 조보를 활용하여 『승정원일기』의 편찬에 활용하였다는 기사 역시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때, 실록 편찬 시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었다는 역사성, 즉 조보의 사초로서의 의미를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조선 사회는 성리학을 국시로, 왕도 정치를 이상으로 삼았다. 군주는 하늘로부터 명을 받아 민을 통치하는 천명의 대행자였으며, 군주와 관련된 것은 모두 역사적 실체로 인식했다. 군주의 언행은 당대의 생생한 역사였으며, 천명이라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식에 따라 군주의 통치 내용은 말단 소읍까지 파급되어야 한다는 의도가 매우 컸다. 그런데 군주의 언행과 조정의 시행사가 지방까지 확산되어 통치 체제를 안정시킬 목적의 하나로 발행된 것이 조보라는 사실이다. 즉 체제의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언론 기능을 적극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조보는 조선시대 공론정치의 확산과 정착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수령을 군주의 분신으로 인식하였던 조선 사회에서 지방 수령에게 군주의 정령이 신속하게 전달되고, 지방관의 업무 수행이 중앙에 신속하게 접수된다는 것은 통치 체제의 구축에 매우 요긴한 장치였다. 역사적으로 통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휘·명령 체계의 정확하고 신속한 전달과 접수 절차를 통해서 구현되었다. 조보가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조치였다는 점에서, 정치 운영의 면과 더불어 역사적인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고 본다.

조보는 현실 정치에 민감한 京外의 관료나 예비 관료군, 그리고 유배되었거나 현직에서 물러난 인사들 및 재야의 양반과 유생들에게 조정의 상황을 전해주는 중요한 정보 제공 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정치는 현실이고 현실 정치의 메카는 살아 있는 권력인 군주가 있는 자리였다. 따라서 정치 현장의 생생한 사실을 담고 있는 조보는, 그만큼 관료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소통 기능을 수행하는데 요긴했다. 황윤석이 조보의 내용 중 일부를 자신의 일기에 수록했고, 누락된 내용은 다른 자료를 참고

하여 보충했으며,<sup>126)</sup> 『승정원일기』의 내용과도 상당 부분 동일했다고 했던 사실<sup>127)</sup>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국을 주도하는 지배층이나 재야 학자, 혹은 상대 정파의 인사들까지도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가 필요했는데, 이의 해소에 적극 이용된 것이 조보였던 것이다. 군주와 조정 관료들의 시행사를 당대 역사로 인식하였던 만큼, 조보의 역사성과 효용성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보의 발행은 실록의 편찬이라는 국책 사업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당시는 물론, 지금도 조선 당대사의 이해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 관찬 사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조보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편찬 자료로 활용되었다는 사실과 당대사의 이해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 부여가 충분하다. 그런 점에서 조보와 실록의 상관관계는 조선시대사의 구체적인 이해와 조보의 사료로서의 역사성 부여가 가능하다.

## V. 맺음말

조보에는 군주의 동정과 관료의 인사 내용 및 조정의 시행사, 전국에서 올라온 상소 등 다양한 국정 운영 사실이 수록되었다. 승정원에서 발행하였으며, 오늘날의 신문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다. 기본적으로 군주의

126) 유영욱, 「『이재난고』를 통해 본 ‘조보’의 유통과 함의」, 『동양한문학연구』 33, 2011.

127) 이근호, 「영조대 승정원일기 개수과정의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31, 2004.

정령(국정 운영 사실)이 전국 각지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소통의 도구, 즉 집권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이용되었다. 지배층의 통치 이념 확산과 통치 체제 구축, 중앙집권적 관료 국가 체제의 확립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언론과 집권 체제의 강화 기능과 더불어 조보의 가치와 의미는 실록 편찬 시 사료의 하나로 적극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양사 및 사대부의 집에 소장된 조보와 각 관청에 보관 중인 조보를 거두어들여 『광해군일기』 편찬에 사용했다는 기사가 있다. 이는 군주의 곁에서 국정 시행사 일체를 기록으로 남겼던 사관의 사초와 동일하게 인식하였던 것과 다르지 않다. 조보가 지니는 사료로서의 가치를 적극 인정하였다는 시대의식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조보와 실록 모두 당대사를 있는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비밀 보장 원칙이 철저했던 사초에 비해, 조보는 상대적으로 공개성이 컸다는 차이점이 보인다.

매일 발행되어 배포된 조보의 열람을 통해 당대사의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니 조보의 효용성은 상당히 컸다. ‘연본(筵本) 한 통은 조보에 올려 팔방에 반포해 집집마다 강경하고 외우며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감복하게 함으로써 세도를 바르게 하고 백성의 뜻을 통일시키는 방도로 삼는 것이 좋겠다.’<sup>128)</sup>는 상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보에 수록된 기사 중 일부는 누설되면 안 된다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국가 기밀의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던 것인데, 군사와 외교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더욱 심했다. 그만큼 조보에 수록된 내용이 대내외 정세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오늘날의 신문과 마찬가지로 하루 동안의 국정 시행사(당대사)를 담고

128) 『정조실록』 권54, 24년 6월 11일(壬戌).

있는 조보와 직전 왕대의 역사상을 망라한 실록은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조보와 실록의 상호 긴밀한 연관성에서 볼 때, 사학사적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2020.11.27. 투고 / 2020.12.10. 심사완료 / 2020.12.10. 게재확정)



[Abstract]

Jobo and Sillok

Kim, Kyung Soo

The Jobo contained various contents including the present situation of monarchy ministerial Appointment and national events and complaints from all over the country. The Jobo was a kind of official gazette issued by seongjeongwon and has functioned similar to today's newspaper.

The Jobo was not only used to strengthen the government system but also to perform media functions for communication. Compared with the sacho which was not see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ecrecy jobo was the basis for understanding the history and political operations of the time because the information was made public.

First of all, the fact that jobo was used as an important material when compiling the sillok proves that he was perceived just like sacho.

The connection between jobo and sillok is the reason why historical meaning is possible.

□ Keyword

Jobo, Sillok, Seongjeongwon, Sacho, The Official Gazette

[참고문헌]

- 김경래, 「인조대 조보와 공론정치」, 『한국사론』 53, 2007.
- 김경수, 「조선조 외사의 설치와 운영」, 『역사학보』 154, 1997.
- 김경수, 「조보의 발행과 그 성격」, 『사학연구』 58·59, 1999.
- 김덕현, 「19세기 후반 당파 정치와 당파 기록물의 이중성」, 『대동문화연구』 105, 2019.
- 김문자, 「정보·통신과 임진왜란」, 『한일관계사연구』 22, 2005.
- 김민환, 『한국언론사』, 사회비평사, 1996.
- 김상호, 「조선시대 공문서관리」, 『서지학연구』 창간호, 1986.
- 김영주, 「조선조 민간인쇄조보의 몇 가지 쟁점」, 『언론학연구』 3, 1999.
- 김영주, 「조보에 대한 몇 가지 쟁점: 필사조보의 기원, 명칭, 폐간시기, 기문기사 성격과 민간인쇄조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3, 2008.
- 김영주·이범수, 「조선시대 민간인쇄조보의 언론사적 의의」, 『한국언론정보학보』 85, 2017.
- 김학천, 「조선시대의 신문(조보) 이야기」, 『한글한자문화』 78, 2006.
- 남도영, 「조선전기의 교통 통신」, 『서울 600년사』, 1977.
- 박정규, 「조보의 기원에 대한 연구」, 『신문연구소학보』 15, 1978.
- 박정규, 「조보와 한성순보의 관계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과학연구』 10, 1991.
- 서진원, 「조보에 대한 기록학적 고찰」, 서울대 석사논문, 2016.
- 양진석, 「국민대 소장 조보의 특징」, 『학예연구』 창간호, 2000.
- 오항녕, 『역주선조실록수정청의궤』, 일지사, 2004.
- 옥영정, 「16세기 조선의 목활자 인쇄와 1577년 조보 인쇄의 가치」, 『한국출판학연구』 46, 2020.

- 유영옥, 「이재난고를 통해 본 조보의 유통과 함의」, 『동양한문학연구』 33, 2011.
- 이근호, 「영조대 승정원일기 개수과정의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31, 2004.
- 임종순, 「조보와 경보에 대하여」, 『서지학』 2, 1969.
- 전해중, 「승정원고」, 『진단학보』 25·27, 1964.
- 정진석, 「월북 언론인 이갑석의 조보 연구」, 『신동아』 2009-12월호, 2009.
- 조맹기, 「소문에서 신문으로: 조보, 대간제도, 독립신문 사이의 내적 연관성」, 『한국소통학보』 15, 2011.
- 조병로, 「조선전기 역리에 대한 일고」, 『소헌남도영박사화갑기념논총』, 1984.
- 조병로, 『한국근세 역제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5.
- 차배근, 「우리나라 조보에 대한 신문학적 분석고」, 『신문연구소학보』, 1980.
- 차용걸, 「조선왕조실록의 편찬 태도와 사관의 역사의식」, 『한국사론』 6, 1981.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최준, 『한국신문사』, 일조각, 1960.
- 최정태, 『한국의 관보』, 아세아문화사, 1992.
- 허선도, 「역제」, 『한국군제사연구』, 육군본부, 1968.

